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56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1415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안 제27조 및 제28조)	2

I.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1415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2.

다. 회 부 일 : 2025. 11.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안 제27조 및 제28조제3호)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¹⁾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생략)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u>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7조²⁾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2)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18세 미만인 사람, ②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④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현행법 제28조³⁾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

구분	결격사유
현행법 제27조제1호	1. <u>18세 미만인</u> 사람

3)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구분	결격사유
현행법 제27조제2호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u>정신질환자</u> 또는 <u>뇌전증환자</u>로서 <u>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②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u> 또는 <u>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u>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u>전문의가</u>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 제27조제3호	3. <u>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하는 장애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u>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u>로 인하여 <u>앞아</u>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 제27조제4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u>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u>로서 <u>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u>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u>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u>전문의가</u>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 제27조제5호	5. <u>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u>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u>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u> 중에 있는 사람

4)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한, 현행법 제28조제3호와 현행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22⁵⁾는 건설기계조종사가 현행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됨.

특히,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다.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3호	<u>취소</u>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기재함.

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에는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해당 병력으로는 면허 발급이 제한⁶⁾되는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격·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⁷⁾

결격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6)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에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7) 매일경제, “‘정신질환’ 병역 면제 받고선...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자 39명”, 2023.4.14. 중 발췌
-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의사·보육교사 등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만 1,38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3,6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사는 38명, 건설기계조종사는 34명이었다. 특히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해당 병력으로는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결격사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 의견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에 결격사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협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 제28조제3호⁹⁾는 안 제27조에서 제목 외의 부분을 안
제1항으로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제27조제2호’에서
‘제27조제1항제2호’로 정비하는 내용임.

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
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9)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3.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